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김한규·문정복·한준호

박홍배 • 민병덕 • 모경종

위성곤 • 문대림 • 진성준

한병도 • 이성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급감함. 이후 2023년에는 1,103만명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이에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됨.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 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

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6조).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10. 문화체육부

제36조의 제목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체육·관광"을 "제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장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둔다.
- ⑥ 한국관광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	ㅁ쉿 케 O ㅂ 가 키	
36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	최그리 교기 중 원기	
36조제5항에 규정된 사무	한국관광진흥청장	

-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또는 한국관광진흥청 소속 공무원으 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문화체육관광부</u>	10. <u>문화체육부</u>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2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u>문화체육관광부</u> ·국토교통부에	문화체육부
는 차관 2명을 둔다.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	제36조(문화체육부) ① 문화체육
<u>체육관광부장관</u> 은 문화·예술	부장관
·영상·광고·출판·간행물·	
<u>체육·관광</u> , 국정에 대한 홍보	체육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	② <u>문화체육부</u>
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	③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문화체육부장

<u>관</u>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u>관</u>-----.

④ (생 략)

<u><신 설></u>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 ⑤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 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 광진흥청을 둔다.
- ⑥ 한국관광진흥청에 청장 1명 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 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